

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입주자모집공고 [입주자모집공고일 : 2024.03.26.(화)]

※ 입주자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ww.dlcon-apt.co.kr/danji/91XAW4/index.html#) 및 해당 공고문 전문(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유형	해당지역	기타지역	규제지역여부	
민영	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(2023.03.26. 이전부터 계속 거주)	대전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거주자	비규제지역	
재당첨제한	전매제한	거주의무기간	분양가상한제	택지유형
없음	6개월	없음	미적용	민간택지

1 단지 유의사항

-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.03.26.(화)입니다. (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, 나이,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임)
-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(2023.03.26. 이전부터 계속 거주) 우선합니다.
-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구분	특별공급	일반공급 1순위	일반공급 2순위	당첨자발표	서류접수	계약체결
일정	2024.04.05.(금)	2024.04.08.(월)	2024.04.09.(화)	2024.04.16.(화)	2024.04.19.(금) ~ 2024.04.23.(화)	2024.04.27.(토) ~ 2024.04.29.(월)
방법	· (PC·모바일) 청약홈(09:00 ~ 17:30) · (현장접수) 사업주체 견본주택	· (PC·모바일) 청약홈(09:00 ~ 17:30) · (현장접수) 청약통장 가입은행	· (PC·모바일) 청약홈	·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주택전시관 (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33)		

- ※ 고려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(10:00~14:00, 은행창구 접수 불가),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·지점(09:00~16:00)에서 청약 가능함(단, 은행 영업정점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)
- ※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:30까지 가능하며, 청약신청일 당일 17: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
- ※ 모바일 : 구글플레이스토어, 애플스토어에서 "청약홈" 검색
- 모바일 청약 시, 청약일 상단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,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취외지역 및 비청약과외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,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,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 (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)
-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, 2순위)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,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	특별공급	일반공급
전매제한기간	6개월	6개월

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과 - 3319호(2024.03.25.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- 공급위치 :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
-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29층 8개동 총 749세대[조합 214세대(보류지 2세대 포함), 임대 40세대] 중 일반분양 495세대 [특별공급 232세대(임대비거주권) 46세대, 다자녀가구 46세대, 신혼부부 86세대, 노부모부양 12세대, 생애최초 42세대 포함] 및 부대시설
- 입주시기 : 2026년 12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- 공급대상 (단위 : m, 세대)

주택구분	주택관리번호	모델	주택형(전용면적 기준)	약식표기	주택공급면적(m ²)			기타 공용면적(이하 주차장등)	계약면적	세대별 대지비	총공급 세대수	특별공급 세대수					일반공급 세대수	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																				
					주거 전용면적	주거 공용면적	소계					기관추천	다자녀가구	신혼부부	노부모부양	생애최초			계																			
민영주택	2024000110		01	059.9070A	59A	59.9070	19.3180	79.2250	44.3640	123.5890	33.2500	149	14	14	26	4	13	71	78	5						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			02	059.9640B	59B	59.9640	19.6300	79.5940	44.4060	124.0000	33.2800	49	4	4	8	1	4	21	28	2
																					03	073.3360A	73A	73.3360	22.9870	96.3230	54.3090	150.6320	40.7100	198	19	19	35	5	17	95	103	6
																					04	073.6000B	73B	73.6000	22.8700	96.4700	54.5050	150.9750	40.8500	99	9	9	17	2	8	45	54	2
합 계											495	46	46	86	12	42	232	263	15																			

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(단위 : 원)

약식표기	공급세대수	동구분	층구분	해당세대수	공급금액						계약금(10%)						잔금(30%)																
					대지비	건축비	계	1차		2차		3차(10%)		4차(10%)		5차(10%)		6차(10%)															
								계약시	2024.05.27	2024.09.27	2025.01.27	2025.05.27	2025.09.27	2026.01.27	2026.05.27	입주		지정기간															
59A	149	105동1,2,4,108동2호	1	4	114,122,000	268,838,000	382,960,000	10,000,000	28,296,000	38,296,000	38,296,000	38,296,000	38,296,000	38,296,000	38,296,000	38,296,000	38,296,000	114,888,000			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	2	6	117,969,000	277,901,000	395,870,000	10,000,000	29,587,000	39,587,000	39,587,000	39,587,000	39,587,000	39,587,000	39,587,000	118,761,000	
																			3	5	121,816,000	286,964,000	408,780,000	10,000,000	30,878,000	40,878,000	40,878,000	40,878,000	40,878,000	40,878,000	40,878,000	40,878,000	122,634,000
																			4	6	125,664,000	296,026,000	421,690,000	10,000,000	32,169,000	42,169,000	42,169,000	42,169,000	42,169,000	42,169,000	42,169,000	42,169,000	126,507,000
																			5-9	30	126,945,000	299,045,000	425,990,000	10,000,000	32,599,000	42,599,000	42,599,000	42,599,000	42,599,000	42,599,000	42,599,000	42,599,000	127,797,000
																			10-19	60	128,229,000	302,071,000	430,300,000	10,000,000	33,030,000	43,030,000	43,030,000	43,030,000	43,030,000	43,030,000	43,030,000	43,030,000	129,090,000
																			20-29	38	129,511,000	305,089,000	434,600,000	10,000,000	33,460,000	43,460,000	43,460,000	43,460,000	43,460,000	43,460,000	43,460,000	43,460,000	130,380,000
																			1	2	111,789,000	263,341,000	375,130,000	10,000,000	27,513,000	37,513,000	37,513,000	37,513,000	37,513,000	37,513,000	37,513,000	37,513,000	112,539,000
																			2	2	115,555,000	272,215,000	387,770,000	10,000,000	28,777,000	38,777,000	38,777,000	38,777,000	38,777,000	38,777,000	38,777,000	38,777,000	116,331,000
																			3	2	119,325,000	281,095,000	400,420,000	10,000,000	30,042,000	40,042,000	40,042,000	40,042,000	40,042,000	40,042,000	40,042,000	40,042,000	120,126,000
4	2	123,092,000	289,968,000	413,060,000	10,000,000	31,306,000	41,306,000	41,306,000	41,306,000	41,306,000	41,306,000	41,306,000	41,306,000	123,918,000																			
5-9	10	124,349,000	292,931,000	417,280,000	10,000,000	31,728,000	41,728,000	41,728,000	41,728,000	41,728,000	41,728,000	41,728,000	41,728,000	125,184,000																			
10-19	20	125,604,000	295,886,000	421,490,000	10,000,000	32,149,000	42,149,000	42,149,000	42,149,000	42,149,000	42,149,000	42,149,000	42,149,000	126,447,000																			
20-28	11	126,862,000	298,948,000	425,710,000	10,000,000	32,571,000	42,571,000	42,571,000	42,571,000	42,571,000	42,571,000	42,571,000	42,571,000	127,713,000																			
73A	198	101동1,3,102동1,3,4,105동3,5,106동1,3,106동3,5호	1	6	138,752,000	326,858,000	465,610,000	10,000,000	36,561,000	46,561,000	46,561,000	46,561,000	46,561,000	46,561,000	46,561,000	46,561,000	139,683,000																
																		2	9	143,430,000	337,880,000	481,310,000	10,000,000	38,131,000	48,131,000	48,131,000	48,131,000	48,131,000	48,131,000	48,131,000	144,393,000		
																		3	9	148,106,000	348,894,000	497,000,000	10,000,000	39,700,000	49,700,000	49,700,000	49,700,000	49,700,000	49,700,000	49,700,000	149,100,000		
																		4	9	152,785,000	359,915,000	512,700,000	10,000,000	41,270,000	51,270,000	51,270,000	51,270,000	51,270,000	51,270,000	51,270,000	153,810,000		
																		5-9	45	154,343,000	363,587,000	517,930,000	10,000,000	41,793,000	51,793,000	51,793,000	51,793,000	51,793,000	51,793,000	51,793,000	155,379,000		
																		10-19	90	155,902,000	367,258,000	523,160,000	10,000,000	42,316,000	52,316,000	52,316,000	52,316,000	52,316,000	52,316,000	52,316,000	156,948,000		
																		20-29	30	157,460,000	370,930,000	528,390,000	10,000,000	42,839,000	52,839,000	52,839,000	52,839,000	52,839,000	52,839,000	52,839,000	158,517,000		
																		1	2	135,492,000	319,178,000	454,670,000	10,000,000	35,467,000	45,467,000	45,467,000	45,467,000	45,467,000	45,467,000	45,467,000	136,401,000		
																		2	4	140,057,000	329,933,000	469,990,000	10,000,000	36,999,000	46,999,000	46,999,000	46,999,000	46,999,000	46,999,000	46,999,000	140,997,000		
																		3	4	144,625,000	340,695,000	485,320,000	10,000,000	38,532,000	48,532,000	48,532,000	48,532,000	48,532,000	48,532,000	48,532,000	145,596,000		
4	4	149,191,000	351,449,000	500,640,000	10,000,000	40,064,000	50,064,000	50,064,000	50,064,000	50,064,000	50,064,000	50,064,000	150,192,000																				
5-9	20	150,714,000	355,036,000	505,750,000	10,000,000	40,575,000	50,575,000	50,575,000	50,575,000	50,575,000	50,575,000	50,575,000	151,725,000																				
10-19	40	152,236,000	358,624,000	510,860,000	10,000,000	41,086,000	51,086,000	51,086,000	51,086,000	51,086,000	51,086,000	51,086,000	153,258,000																				
20-29	25	153,759,000	362,211,000	515,970,000	10,000,000	41,597,000	51,597,000	51,597,000	51,597,000	51,597,000	51,597,000	51,597,000	154,791,000																				

3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
공급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 ※ 2024.03.25. 시행된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,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. ※ 2024.03.25. 시행된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,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처리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</td> <td>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</td> </tr> <tr> <td>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부 중 중복당첨된 경우 :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</td> </tr> <tr> <td>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</td> <td>모두 부적격 처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■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 	구분	처리방법	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	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	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부 중 중복당첨된 경우 :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	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	모두 부적격 처리												
구분	처리방법																				
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	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																				
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부 중 중복당첨된 경우 :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																				
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	모두 부적격 처리																				
무주택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(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"1 공통 유의사항" p.2 참조) -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주 요건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기관추천(장애인), 국가공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특별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- 노부모부양 / 생애최초 특별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																				
청약통장 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특별시 및 부산광역시</th> <th>그 밖의 광역시(대전광역시)</th> <th>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(세종/충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용면적 85㎡ 이하</td> <td>300만원</td> <td>250만원</td> <td>2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전용면적 102㎡ 이하</td> <td>600만원</td> <td>400만원</td> <td>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전용면적 135㎡ 이하</td> <td>1,000만원</td> <td>700만원</td> <td>400만원</td> </tr> <tr> <td>모든면적</td> <td>1,500만원</td> <td>1,000만원</td> <td>5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	구분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(대전광역시)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(세종/충남)	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	전용면적 102㎡ 이하	600만원	400만원	300만원	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	모든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
구분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(대전광역시)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(세종/충남)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102㎡ 이하	600만원	400만원	300만원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																		
모든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																		

4 일반공급 신청자격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■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